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54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인	2인
재적임원	9인	2인
참석임원	9인	2인

1. 일시 : 2026년 5월 28일(목) 08:30~11:30 (회의 소집 통보일 : 2026년 5월 20일)

2.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9) : 이계안, 김병환, 선권수, 김우영, 김영미, 이자희, 박승현, 이대화, 김지훈
- 감사(2) : 정재흠, 안상우

○ 불참 임원
- 이사(0) : 없음
- 감사(0) : 없음

○ 배석 교직원
- 법인(3) : 사무국장 박재순, 실장 김정웅, 과장 임지윤
- 학교(2) : 교무처장 김정원, 기획경영본부장 백상미

4. 의안

제1호. 이사회 구성 운영을 위한 정관 개정 심의
제2호. 규정 제·개정(안) 심의
제3호. 2026-2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계획 승인제청 심의
제4호. 세종학당 운영 업무위탁계약(웅비세종학당) 이행보증보험 가입 승인제청 심의
제5호. 기타 안건
1) 간서명 이사 결정 및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5. 개회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를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류원렬 교목실장·신학과 교수(이하 '교목실장')의 사회와 사도신경 봉독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찬송가 384장을 다 같이 부르고, 교목실장이 대표 기도하다. 이어 다 같이 성경 말씀 역대상 8장 33~40절, 시편 37편 23~24절을 봉독하고 교목실장이 '실패를 넘어서는 은혜'의 주제로 말씀을 전한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다.

(교목실장 이석)

예배를 마친 후 이계안 이사장(이하 '이사장')이 이사 재적인원 9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이사

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감사 재적인원 2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6. 전차 회의록 보고

박재순 법인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 2026. 4. 28.(화)에 개최된 제253회 이사회 회의록과 주요 심의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다. 이사장이 참석 이사들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 결과에 대한 이견 유무를 확인한 후 이견 없으므로 채택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김병환 이사의 동의와 이자희 이사의 재청으로 제253회 이사회 회의록 채택을 만장일치 가결하다.

7. 법인 및 위원회 현황 보고

사무국장이 법인 보고, 「정관」 관련, 위원회 현황 추가 및 변동 사항을 보고하다.

8. 심의 사항

이사장이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무 처리'의 순서 변경을 제안하다. 먼저 안건 '제2호. 규정 제·개정(안) 심의', '제3호. 2026-2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계획 승인제청 심의', '제4호. 세종학당 운영 업무위탁계약(웅비세종학당) 이행보증보험 가입 승인제청 심의'를 먼저 논의하고 '제1호. 이사회 구성 운영을 위한 정관 개정 심의' 및 '제5호. 기타 안건' 순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참석한 전체 이사들의 의견 유무를 물어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김우영 이사의 동의와 김영미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의안] 제2호. 규정 제·개정 승인제청

이사장이 '제2호. 규정 제·개정(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김정원 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과 백상미 기획경영본부 본부장(이하 '본부장')에게 각각 설명을 요청하다.

1)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

교무처장이 기존 교양과목이 교양필수과목, PTU교양(P교), 전공기초교양, 교양선택과목의 네 가지로 구분·운영되어 왔으나, PTU교양 과목 수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다. 이에 학생들의 교양 필수학점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학칙 제28조 제2항의 교양과목 구분에서 PTU교양(P교)을 삭제하고 교양필수과목·전공기초교양·교양선택과목의 세 가지로 개편하되, 기존 PTU교양 과목 중 PTU인성멘토링과 PTU취창업역량개발은 대학교양필수과목으로, 나머지 과목들은 교양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아울러 제31조(졸업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와 관련하여,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운영된 제2전공 제도가 2017학년도 이후 전공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의 학번별 졸업학점 이수 규정 및 규정류 관리지침에 따른 조항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임을 설명하다.

PTU교양 폐지 여부를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PTU교양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던 PTU교양을 교양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이수구분 변경 목록에 기재된 PTU교양 과목들을 교양선택과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인지 재차 확인하자, 교무처장이 PTU교양 과목 중 PTU인성멘토링과 PTU취창업역량개발은 대학교양필수과목으로, 나머지 과목들은 교양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이어 김우영 이사가 3학점 과목의 존재 여부를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현재 3학점 과목은

없으며 해당 과목들은 모두 1학점 또는 2학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졸업학점 기준 및 교양필수·전공필수 등의 이수학점 기준이 학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될 경우 해당 내용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확인을 요청하다. 이에 대해 본부장이 졸업학점 기준이 삭제된 것이 아니며, 제31조에는 2016학번 이전과 2017학번 이후의 적용 기준이 구분되어 있고, 현재 적용 대상이 아닌 2016학번 이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을 보완 설명하다. 또한 2017학번 이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졸업학점 기준은 제31조에 그대로 유지되나 이번 개정안 발췌본에는 해당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음을 부언하다. 이에 관련 조문과 현재 적용되는 졸업학점 기준을 정리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본부장이 관련 조문과 졸업학점 기준을 정리하여 차기(제255회)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다.

제31조의 조문이 '졸업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임에도 개정 법문에서 '교양과정의 졸업요구학점을 포함하여'라는 표현만 기재되어 주어와 목적어가 불명확해졌음을 지적하며, 해당 문구 앞에 주어를 추가하여 문장 구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자, 이사장이 해당 수정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수정 의사를 확인하자, 교무처장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겠다고 답변하다.

PTU교양 폐지 및 트랙제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 학생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면서도, 재학생과 신입생 간 이수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번별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졸업 직전 이수학점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다. 또한 향후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교양교육 운영과 핵심역량 체계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만큼, 교양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핵심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교양교육 체계와 핵심역량 간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교양과목을 모두 2학점으로 운영할 경우 학생들의 시간표 편성에 불편이 발생하고 수업시간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점, 과목 수 증가에 따른 운영·관리의 어려움과 강사 확보 및 교수 시수 충족 측면에서의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타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주로 3학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재정적 효율성과 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3학점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다.

이사장이 제안한 학번별 적용 기준 안내 방안, 교양교육 핵심역량 체계 유지 및 보완 방안, 교양과목 3학점 체계 운영 검토 결과는 차기(제255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안한 제31조 조문 형식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안에 대해 수정 승인 의결을 제안하자, 김영미 이사의 동의와 김우영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2) 「평택대학교 2.1환경연구소 규정」 제정(안)

본부장이 평택대학교 내 2.1환경연구소를 신설함에 따라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본부장이 2.1환경연구소가 기후위기와 인구절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환경과 사회의 온전한 회복을 추구하는 기독교적 청지기 정신을 바탕으로 복원력 증진을 위한 융복합 솔루션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전환에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 연구소로 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아울러 규정 제정안만으로는 연구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별도로 2.1환경연

구소 운영계획서를 배부하여 추가 설명하겠다고 하다.

본부장은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2.1환경연구소는 평택대학교 부설연구소로서 소장과 5인의 운영위원회, 지속가능성실행위원회, 미래환경센터, 미래사회센터 및 사무국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연구소의 주요 업무는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 수행과 평택시 관련 협력과제 발굴이며, 대학 부설연구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및 인재양성 기능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다. 또한 연간 운영계획으로 연구소 운영체계 정비, 연구과제 발굴, 협력과제 수행 및 교육사업 추진, 성과분석 및 차년도 과제 도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참여 기관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및 평택시 협력 연구과제, 기업 공동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연구비와 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다.

2.1환경연구소가 신규로 설치되는 연구소인지 확인하고, 연구소의 인력 구성과 직제,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자, 본부장이 2.1환경연구소는 신규로 설치되는 연구소이며, 소장과 5인의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하에 지속가능성실행위원회, 미래환경센터, 미래사회센터 및 사무국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다. 연구소 인력이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것인지 재차 질의하자, 연구소의 재정은 초기에는 기부금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과제 수주와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비와 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다. 이어 김지훈 이사가 대학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질의하자, 본부장이 연구소 운영을 위한 대학의 별도 예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답변하다.

연구소 규정 제정안은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의결하는 사항인 만큼 규정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2.1환경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협약 당사자 3자 등이 협력하여 녹색전환, 수소에너지, 지역 환경문제 해결 등 산학협력 중심의 연구를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하다. 다만

운영계획서에는 연구소의 목적과 주요 사업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규정에는 설립 목적과 연구 분야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연구소가 추구하는 핵심 연구 분야와 운영 방향이 규정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본부장이 규정에는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였다고 설명하자,

제5조 운영위원 구성 조항에 2.1지속가능재단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칙이나 목적 조항에는 협약 당사자 3자 간 협력체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다. 연구소 운영에 특정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근거와 관계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 추천권만 부여하는 것은 규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며, 제4조의 제목 역시 '조직 및 임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조문에는 조직과 인력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다. 또한 제4조 제4항의 연구위원 자격 요건에 석사학위 이상 등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위원과 연구원의 역할 및 직무상 차이가 무엇인지, 규정상 연구원은 연구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위원은 연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자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다. 이어 제5조의 운영위원회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질의하자, 본부장이 운영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다.

연구소 규모에 비하여 조직과 위원회 체계가 지나치게 방대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본부장이 현재는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연구소의 확대 가능성과 대학과 연계한 연구기능 강화를 고려하여 조직체계를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운영위원회는 인원수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정책 자문단 성격의 지속가능성실행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직 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본부장이 해당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답변하다.

2.1환경연구소 규정 제정안은 시급히 처리하기보다는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연구소 설립 취지는 협약 당사자 3자 간의 산학협력을 통해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러한 협력 관계와 설립 배경이 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다. 또한 규정상 외부기관인 2.1지속가능재단이 운영위원 추천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 기관의 역할과 관계가 규정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아울러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서에는 기부금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나 규정에는 본교의 연구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소를 대학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다. 규정의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정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후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2.1환경연구소 규정 제정안 전반을 검토한 결과 규정의 정교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며, 대학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대학의 연구역량과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다. 다만 최초로 설치되는 연구소인 만큼 규정의 명칭을 '평택대학교 2.1환경연구소 설치 규정' 또는 '평택대학교 2.1환경연구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으로 정하여 연구소 설치의 목적과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제2장 조직 및 임원과 관련하여 연구소 조직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각 직위자의 임명 및 면직에 대한 권한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다. 또한 제4장의 지속가능성실행위원회와 정책자문단 관련 규정에 대하여 두 조직의 역할 및 기능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조문에서는 정책자문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문 내용은 실행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 조직의 주체성과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실행위원회와 정책자문단의 역할 및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재정 및 회계 조항과 관련하여서도 대학의 부설기관인 연구소 재정이 어떠한 소속과 체계 아래에서 운영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과 결산의 심의·승인 절차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의 책임과 관리체계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규정을 정비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금번에는 의결을 보류하고,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교하게 보완한 후 차기 또는 차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2.1환경연구소 설립 취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ESG,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연계 등의 관점에서 대학의 전략 방향과 부합하고 연구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와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다. 또한 연구소 운영 방향에 따라 대학의 중점 연구소로 육성하거나 지역 기반 산학협력 중심 연구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운영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다만 규정에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반영할 경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와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규정을 반복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다. 이에 연구소의 설립 목적, 운영 취지, 조직 구성 등 기본적인 사항은 규정에 담고, 세부 운영 사항은 운영계획서 또는 별도의 지침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과 운영계획서의 역할을 적절히 구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다.

이사장이 「평택대학교 2.1환경연구소 규정」 제정안과 관련하여 여러 이사들이 제시한 의견

과 지적사항, 즉 연구소 설립 취지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 관계 명시, 조직 체계 및 직위별 임명·면직 절차 정비, 운영위원회 인원 명시 및 조직 균형 확보, 실행위원회와 정책자문단의 역할 구분 명확화, 재정 및 회계 운영 체계 구체화 등을 반영하여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 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재심의할 것을 제안하자, 김영미 이사의 동의와 선권수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3) 「직제 규정」 개정(안)

본부장이 「직제 규정」 개정안은 대학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대학 성과 분석·평가 기능을 총괄하는 IR센터를 기획경영본부 산하에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대외평가 대응체계 일원화 및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다. 2025년 성과평가 당시 개선·보완사항으로 대학 경영 및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IR센터 설립이 요구되었으며, 혁신원 교육성과관리 기능과 대학 차원의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신속한 자원 투입과 품질 제고가 권고되었다고 설명하다. 이에 따라 대학은 기획경영본부 산하에 IR센터를 신설하여 통합 성과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며, 관련 세부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또한 교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IR센터의 운영방안과 조직구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하며, 별첨으로 배부한 IR센터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IR센터는 기획경영본부 산하에 설치하고 센터장 1인, 팀장 1인, 연구원 2인으로 구성할 계획이나 현재 구체적인 보직 발령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다. 아울러 IR센터의 핵심 역할은 평택대학교의 ACE PASS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경영지표와 교육지표를 통합 관리하고, 대학 공통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며, 각종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직제규정 개정안의 개정 사유란에 'AI·IR센터 신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AI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하자, 본부장이 해당 표현은 오기이며 AI는 포함되지 않고 개정안은 IR센터 신설에 관한 사항이라도 답변하다.

IR센터 인력은 시스템을 직접 설계·구축하는 역할보다는 구축된 시스템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대시보드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질의하자, 본부장이 현재 ACE PASS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단계에 있으며 향후 해당 시스템에 AI 기능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이후에는 데이터 활용과 운영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다. 시스템 구축은 별도의 예산과 사업을 통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IR센터는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재차 질의하고 ACE PASS를 활용해서 다음 이사회에 4주기 평가지표 대시보드 보고해달라고 요청하자, 본부장이 주된 역할은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활용임을 밝히고, 다음 이사회에 ACE PASS를 활용해서 4주기 평가지표 대시보드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다.

직제규정 개정안의 개정 사유에 대학 성과평가 결과가 언급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위와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자, 본부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과정에서 IR센터 설립 필요성이 주요 개선·보완사항으로 제시되었다고 설명하다. 또한 현재 대학혁신원 산하에 성과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성과 중심으로 기능이 한정되어 있어 대학 전체의 주요 경영지표와 성과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며, 최근 대학 운영에서는 재학생 충원율과 같은 핵심 지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대학 전반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혁신원 산하 성과관리

센터보다 기획경영본부 산하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IR센터 신설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여기서 언급된 C등급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 B, C, D 등급 체계상의 C등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해당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대학의 현재 성과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는 A, B, C 등급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평가 항목에서 평택대학교는 C등급을 받았다고 보완 설명하다. 당초 대학이 수립한 계획에서는 B등급 수준을 목표로 하였으나 IR센터가 부재한 점 등이 지적사항으로 반영되어 C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언하다. 이에 IR센터가 신설될 경우 해당 평가등급을 개선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IR센터를 신설하여 대학의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현재 대학혁신원 산하에 성과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IR센터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인지 질의하자, 본부장이 직제규정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기존 성과관리센터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하여 기획경영본부 산하의 IR센터로 이관·운영할 계획이며, 별도의 조직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성과관리 기능을 IR센터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직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참석 이사들에게 이의 여부를 확인한 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자, 김우영 이사의 동의와 김영미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2호. 규정 제·개정 승인 제청**

구분	규정명	의결 결과
1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 - 학칙 관련 조문 및 졸업학점 기준을 정리하여 보고 - 교양교육 핵심역량 체계 및 교양과목 운영 개선 방안 보고 - 제31조 ① "학생은" 주어 추가	수정 승인
2	「평택대학교 2.1환경연구소 규정」 제정(안) - 규정의 전체 내용 수정 후 차기 이사회에서 재심의	미승인
3	「직제 규정」 개정(안) - 사유란 AI·IR센터 신설 오타 수정 → "AI" 문구 삭제	원안 승인

• **ACE PASS를 활용한 4주기 평가지표 대시보드 보고 요청**

1) 보고 부서(장) : 기획경영본부(본부장)

2) 보고 시기 : 제255회 이사회

[의안] 제3호. 2026-2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계획 승인제청 심의

이사장이 '제3호. 2026-2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계획 승인제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처장이 본 안건은 학과별 교육 운영 여건,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원 운영 현황, 향후 정년퇴직 및 의원면직 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학년도 하반기 신규 전임교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하다. 각 단과대학 및 학과로부터 총 14명의 신규 전임교원 채용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교원인사위원회가 2026년 4월 22일과 4월 29일 두 차례 심의를 실시하였고, 학과별 재학생 수, 전임교원 현황, 교원 확보율, 대학원 운영 여부, 향후 퇴직 예정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9명의 신규 전임교원 채용을 승인 대상으로 상정하였다고 설명하다.

교무처장이 학과별 채용 필요성과 관련하여 스마트모빌리티학과는 현재 전임교원이 2명에 불과하여 재학생 수와 실습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할 때 추가 전임교원 확보가 필요하며, 최근 2년간 의원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다. ICT환경융합학과는 환경융합공학과 대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 분야 교육과 대학원 운영을 위해 관련 전공 전임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경영학과는 최근 퇴직 교원이 발생하여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유학생 대상 영어강의 운영과 마케팅 분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임교원 확보가 필요하고 일부 세부 전공은 겸임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일본학과는 원어민 교원 채용을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전임교원이 2명이고 2026학년도 신입생 26명이 학과를 선택한 상황을 고려하여 채용 필요성을 인정하였다고 설명하다.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및 재활상담학과는 사회서비스대학 소속 학과로서 8월 말 정년퇴직 예정 교원이 있어 충원이 필요하며, 사회복지학과와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는 대학원 운영 비중이 높고 재활상담학과는 현장실습 및 자격과정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하다. 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는 실습 중심 교육과 산업체 연계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으며 현재 전임교원 3명 중 1명이 사망하여 추가 교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다.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은 설치 기준상 7명의 교원이 필요하나 겸임교원과 타 대학원 교수의 겸직 발령을 통해 기준 충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총 14개 학과에서 채용 요청이 있었으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학과의 신규 전임교원 채용을 승인 대상으로 상정하였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안의 비고란을 검토한 결과 학과별 채용 자격요건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학과는 박사학위 소지 여부만 명시하고 일부는 박사학위와 전공 분야를 함께 명시하며 일부는 특정 대학이나 세부 자격요건까지 규정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설명하다. 이에 채용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대학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시에는 학과별 특수성을 반영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사장이 채용계획 상 9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6명을 선발하는 방식의 경우 이사회가 개별 지원자에 대한 평가와 우선순위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사회가 각 후보자의 적합성을 직접 평가하여 선발 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하다. 이에 이사장은 대학이 실제 필요성과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이 필요한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재 제출한 9명 범위 내에서 채용이 필요한 인원을 최종 확정하고, 이에 대한 채용공고를 실시한 후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대화 이사의 동의와 김지훈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3호. 2026-2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계획 승인 제청 : 원안 승인**

(정회 10:20) 이사장이 정회를 선포하다.
(속개 10:30) 이사장이 속개를 선포하다.

[의안] 제4호. 세종학당 운영 업무위탁계약(웅비세종학당) 이행보증보험 가입 승인제청 심의

이사장이 '제4호. 세종학당 운영 업무위탁계약(웅비세종학당, 피보험자명 : 세종학당재단) 이행보증보험 가입 승인제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본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본부장이 세종학당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며, 현재 88개국 256개 세종학당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이어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은 2024년부터 베트남 하롱대학교와 공동으로 베트남 꽝닌성에 웅비세종학당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연간 4,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매년 30여 개 강좌를 개설하고 약 500명의 베트남 현지인이 수강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아울러 세종학당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세종학당재단 지침 변경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승인제청(보험기간 2026.01.01.~2027.08.31.(608일), 보험가입금액 49,000,000원)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안건 설명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부당 집행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간 지원금 4,900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또한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또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함께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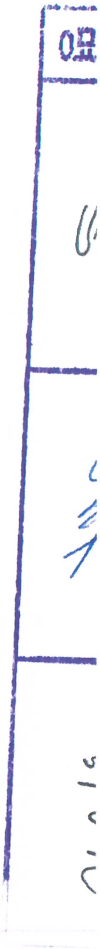
이사장이 전체 이사들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후 이견 유무를 물어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자, 이자희 이사의 동의와 박승현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4호. 세종학당 운영 업무위탁계약(웅비세종학당) 이행보증보험 가입 승인 제청 : 원안 승인**

(대학 관계자 이석)

[의안] 제1호. 이사회 구성 운영을 위한 정관 개정 승인제청





[의안] 제5호. 기타 안건

1) 간서명 이사 결정 및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이사장이 '제5호. 기타 안건'의 '1) 간서명 이사'를 이사장, 이대화 이사, 김지훈 이사로, '2) 회의록 비공개 범위'는 '제1호. 「정관」 개정 승인제청 심의(이사회 구성 운영을 위한 정관 개정 심의)'는 '비공개', '제2호 내지 제4호'는 관련 법령과 본 법인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김우영 이사의 동의와 선권수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5호. 기타 안건**
1) 간서명 이사 결정 : 이사장, 이대화 이사, 김지훈 이사
2)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 제1호. 「정관」 개정 승인제청 심의(이사회 구성 운영을 위한 정관 개정 심의) : 비공개
- 제2호 내지 제4호 :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름

9. 폐회

이사회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김영미 이사의 동의와 이자희 이사의 재청으로 폐회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11시 30분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6. 5. 28.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이 계 안

이 사 김 병 환

이 사 김 영 미

이 사 김 우 영

이 사 김 지 훈

이 사 박 승 현

이 사 선 권 수

이 사 이 대 화

이 사 이 자 희

감 사 정 재 흠

감 사 안 상 우